

감사보고서

성신여자대학교 총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6년 5월 4 일

학교법인 성신학원

감사 이정호

감사 성진학

피감사자 (임회인)

직명 연구산학협력단장

성명 BNK